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23호 2021. 9. 23(목)

거창 후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35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제2021-1356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4
제2021-1370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09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 - 13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3.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71-49 등 3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개명길 5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629, 628, 63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71-49	20210923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4-17, 산48-3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422-175	20210923	20090401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6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촌2길 41-12	20210923	20090401	가지리 4개 마을중 가운데 자리한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개명길 56-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개명길 56	20210923	20090401	300여년 전 성산 배씨가 열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21 - 1356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7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일원

다. 사 업 내 용 : 저수지 1개소(제당 L=104.9m, H=22m), 양수장 1개소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일원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 건설과(농업기반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2)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7 필지		294,217	48,396		81인		
1	와룡리	1377	전	165	165	부산 사상구 주례동 616-4 벽산아파트 102동 206호	신*춘		
2	와룡리	1376	전	793	79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 주공아파트 308-809	신*민		
3	와룡리	산40	임	10,116	1,030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21 경북 금릉군 대덕면 대리 699	한*영 한*성		1/2 1/2
4	와룡리	738	전	139	139		양*명		
5	와룡리	739	전	813	813	경남 진주시 의곡길 52-6(봉래동)	신*출	근저당 (신원농업협동조합)	
6	와룡리	740	전	350	350	진주시 의곡길 52-6 (봉래동)	신*출	근저당 (신원농업협동조합)	
7	와룡리	741	전	707	707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69	박*천		
8	와룡리	742	전	433	43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45-4	신*균		
9	와룡리	743	답	192	192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5	평산신씨 제정공파 송파종중		
10	와룡리	1374	답	440	44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5	평산신씨 제정공파 송파종중		
11	와룡리	1375	천	40	40		신*권		
12	와룡리	744	답	311	311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5	신*식		
13	와룡리	745	답	820	82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5	신*식		
14	와룡리	746	답	936	936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5	신*식		
15	와룡리	732	답	1,160	1,16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10	평산신씨 제정공파 용담종중		
16	와룡리	730	전	383	38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89	신*준		
17	와룡리	733	답	2,955	57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6길 26-22(송파동)	신*구		
18	와룡리	729	전	76	76	경남 거창군 신원면 비곡길 42-1	신*철		
19	와룡리	728	전	2,102	2,102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07-1	신*철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와룡리	747	답	916	916	경남 거창군 신원면 비곡길 39	신*철		
21	와룡리	731	답	1,332	1,332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51-19	신*옥		
22	와룡리	723	전	717	717	경남 거창군 신원면 비곡길 31-8	신*봉		
23	와룡리	722	답	846	846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51-49	신*윤		
24	와룡리	748	답	1,319	1,319	경남 김해시 삼방동 554-15	신*환		
25	와룡리	749	답	1,868	1,868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12번길 27,8동 406호(화명동,우신아파트)	신*열	근저당 (신원농업협동조합)	
26	와룡리	750	답	1,898	1,89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9-1303	신*용		
27	와룡리	720	임	3,250	59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33, 101동 1001호(현대아파트)	임*석		
28	와룡리	751	묘	370	370		양*운		
29	와룡리	799	답	595	59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9-1303	신*용		
30	와룡리	800	전	496	496	경남 거창군 신원면 비곡길 39	신*철		
31	와룡리	산174	임	24,496	1,08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48, 104동 801호(대원동, 대원대동1차아파트)	박*일		
32	와룡리	1763	도	1,415	1,318	국	건설부		
33	와룡리	1762	도	797	797	국	건설부		
34	와룡리	1753	구	132,896	8,869	국	농림수산부		
35	와룡리	1761	도	1,491	296	국	건설부		
36	와룡리	산177	임	17,653	5,521	경남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87	평산신씨 계갑파종중		
37	와룡리	산178	임	8,926	2,115		박*욱		
38	와룡리	산175	임	40,066	1,35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1402호(한성사랑채아파트)	염*중		
39	와룡리	1379-1	전	149	8	국	거창군		
40	와룡리	1380-1	답	297	6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23, 107동 1402호(금산흥한골든빌)	차*윤		
41	와룡리	1768	도	569	39	국	건설부		
42	와룡리	1442	답	401	5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5	신*권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와룡리	1529	구	141	3	국	농림수산부		
44	와룡리	1382-1	도	218	1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8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5 거창군	신*철 신*식 거창군		1/2 1/2 공유자 지분 1/2
45	와룡리	1382-2	묘	289	144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8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5	신*철 신*식		1/2 1/2
46	와룡리	1369-7	도	33	33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5	신*수		
47	와룡리	1774	도	2,945	431	국	건설부		
48	와룡리	1369-6	도	30	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5	신*수		
49	와룡리	1370-4	도	63	63		진*례		
50	와룡리	1370-3	도	79	7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6	신*식		
51	와룡리	산176	임	13,431	89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51, 나동 302호(쌍문동, 원창빌라)	차*규	압류 (포천세무서)	
52	와룡리	1371-4	도	46	46	국	거창군		
53	와룡리	1371-6	답	10	10	국	거창군		
54	와룡리	1371-8	답	40	40	국	거창군		
55	와룡리	1371-2	답	2,566	5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215동 1701호(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차*열	근저당 (최*동)	
56	와룡리	1371-1	천	129	129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12번길 27, 8동 406호(화명동, 우신아파트)	신*열		
57	와룡리	1773	도	440	142	국	건설부		
58	와룡리	1387	답	1,886	114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506	신*식		
59	와룡리	1387-1	답	8	2	국	거창군		
60	와룡리	1378-4	답	406	99	국	거창군		
61	와룡리	1378-1	답	573	18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616-4 벽산아파트 102-206	신*춘		
62	와룡리	산176-1	임	126	126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51, 나동 302호(쌍문동, 원창빌라)	차*규		
63	와룡리	1475	묘	1,218	2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31-3	평산신씨 제정공파 직원공종중		
64	와룡리	1463	답	5	5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89	신*정		
65	와룡리	1464	답	79	7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90	신*부		
66	와룡리	1465	답	39	39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89	신*정		
67	와룡리	1466	답	106	106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81	신*균		
68	와룡리	1468-2	임	293	3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9-1303	신*용		

토지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명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9	와룡리	1468-1	대	251	21	경남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68-1	이*달	근저당 (신원농업협동조합)	
70	와룡리	1468	임	163	10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405-15	신*부		
71	와룡리	1467	답	514	29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51-49	신*윤		
72	와룡리	1521	답	33	33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07-1	신*철		
73	와룡리	1522	답	29	29		신*균		
74	와룡리	1523	답	95	9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9-1303	신*용		
75	와룡리	1456	도	838	437	국	농림수산부		
76	와룡리	1385-10	답	442	37	경남 거창군 신원면 비곡길 42-1	신*철		
77	와룡리	1527-2	유	959	32	국	거창군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table>
<tr><td colspan="2">1.제　목</td><td></td></tr>
<tr><td rowspan="2">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td><td>성 명(명칭)</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3.의　견</td><td colspan="2"></td></tr>
<tr><td>4.기　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거 창 군 수　귀하</td></tr>
<tr><td>비 고</td><td colspan="2">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거창군 공고 제2021-1370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법령을 단순히 확인 및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처우개선 등 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라. 수당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6조)
바. 법령 및 조례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현행 제5조~제8조, 제10조, 제11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055-940-3093/055-940-3089

이메일: cutelkk@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제출일자	2021.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법령을 단순히 확인 및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처우개선 등 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라. 수당 지원근거 신설함(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6조)

바. 법령 및 조례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현행 제5조~제8조·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23조

2)「지방재정법」제17조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111,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3. ~ 10. 12.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평가의뢰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처우개선 등 사업 및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

▶ 관련조문 : 제5조(수당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한해 지급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 비용(a - b)		111	111	111	111	111	555
세출	도비	0	0	0	0	0	0
	군비	111	111	111	111	111	555
	소계(a)	0	0	0	0	0	0
세입	지방세	-	-	-	-	-	-
	소계(b)	-	-	-	-	-	-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최일선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로 타당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 110,880천원

- 30,000원×308명×12개월=110,880,000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09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국도비 공모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거창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안 제2조제3호)

1)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신설

나. 마을만들기 관련 비상설 위원회 추가(안 제10조)

1) 현행)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신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다. 비상설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정비(안 제11조・제14조)

1) 위원회 임기 삭제

2) 정기회・임시회 구분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0. 12.(화)

나. 제출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 50147

○ 전화 : 055)940-8280, FAX: 055)940-8229

○ 이메일 : qudans@korea.kr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 조 례 명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도 포함한다.**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또는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 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삭 제>**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